

#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(등록취소)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3조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취소) 통지하였으나, 폐문·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,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10. 13.  
부산광역시장

- 공고기간: 2026. 10. 13. ~ 2026. 11. 5. (24일간)
- 공고대상: 위반업체 1개소

| 업체명<br>(대표자)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반내역 및 위반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분내역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대성씨그린(주)<br>(노홍원) |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18,<br>216호(충무동1가) | ○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<br>계속해서 석유판매업 미영업<br>▷ 법 제13조제4항제6호 | 등록취소<br><2026.10.1..> | 일반<br>대리점 |

<안내사항>

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끝.